

# 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: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설 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

나. 적용지역 : 도내 전지역

다. 처분기간 : 2020. 11. 9.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라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다중 이용 시설	중점 관리시설 *핵심 방역 수칙 증수	4㎡당 1명 인원 제한 (식당·카페) 좌석 1m 거리 한칸 띄우기, 키퍼이 설치(150㎡ 이상) ※ (뷔페의 경우) 공용 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
	일반 관리시설	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
모임·행사	500명 초과 방역수칙 의무화, 지자체 신고·협의	
등교(학교)	밀집도 2/3 원칙, 지역·여건 조정 가능	
종교활동	좌석 한 칸 띄우기, 모임·식사 자제 권고(숙박행사 금지) ※ 단체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체와 협의하여 결정	
스포츠 관람	관중 50% 입장	
실내 문화·여가·국공립시설	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(경륜·경마 등 50% 인원 제한)	
사회복지 이용시설	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(비대면서비스 병행)	

○ 중점관리시설(9종) : 유홍시설 5종(클럽·룸살롱 등 유홍주점, 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텐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 
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

○ 일반관리시설(14종) 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PC방, 오락실·멀티방 등,  
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상점·마트·백화점, 독서실·스터디카페

마. 처분사유 :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조치시행

바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

사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,  
제83조제2항 및 제4항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동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11월 9일

전라남도지사



**불임1****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[의무사항]****□ 중점관리시설 9종(핵심방역수칙)**

구 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, 유증상자 출입금지</li> <li>■ 사업주·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■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</li> <li>■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 *음식섭취, 세수, 양치, 공연 활동 등은 제외</li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현팅포차, 감성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	
유흥주점 (클럽, 봄살롱 등), 콜라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</li> <li>■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신고면적 4m<sup>2</sup>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li>■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(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선택 가능)</li> </ul>	
단란주점		
실내 스탠딩 공연장		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</li> <li>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</li> <li>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신고면적 4m<sup>2</sup>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</li> </ul>	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</li> <li>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</li> </ul>	
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 휴게음식점· 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신고 면적 150m <sup>2</sup> 이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</li> <li>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	

## ■ 일반관리시설 14종(핵심방역수칙)

구 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</li> <li>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</li> </ul> </li> <li>■ 사업주·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·환기(일 2회 이상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 *음식섭취, 세수, 양치, 공연 활동 등은 제외</li> </ul>
실내체육 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/ul>	
상점·마트·백화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(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)</li> </ul>	
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적용 및 기타 세부사항은 정부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름

## 불임2

###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수칙 의무화

□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·행사로서,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·모임·행사가 개최되는 장소

#### < 대상 집합·모임·행사 >

- ▲ (행사) 집회·시위, 설명회(투자설명회,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
- ▲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
- ▲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</li> <li>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</li> <li>▶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</li> <li>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/ul>

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참석자 등 모임·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### 불임3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

□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%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자체 (숙박행사 금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</li> </ul> </li> <li>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체</li> <li>■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/ul> </li> <li>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</li> <li>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</li> <li>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</li> <li>■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</li> <li>■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% 이내 참여</li> </ul> </li> <li>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자체 (숙박행사 금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</li> </ul> </li> <li>■ 시설 내 음식 섭취 자체</li> <li>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li>■ 마스크 착용</li> <li>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</li> </ul>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
\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